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69
----------	-----

2019. 10. 25.(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9년 10월 8일

다. 회부일자 : 2019년 10월 11일

라. 상정일자 : 2019년 10월 17일

- 제3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재난안전실장 권석규)

가. 제안이유

- 「하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하천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하천점용료 산정기준 중 점용료 등 면제사항 변경(안 별표 1)
 - 1건의 점용료 등이 2천원 미만 면제 → 5천원 미만 면제

3. 검토보고 요지

(건설환경소방수석전문위원 김병준)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상위법령인 「하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하천점용료 등의 부과 면제 금액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19. 2. 8.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에 따라 소액의 하천점용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행정상 비효율성을 감안하여 하천점용료 등의 부과를 면제하는 금액의 기준을 현행 2천원에서 5천원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19. 7. 8. ~ '19. 8. 2.)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라. 검토의견

-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인 「하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하천점용료 등의 부과를 면제하는 금액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제1호 중 “2천원 미만”을 “5천원 미만”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산정된 사용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개정 95. 6. 23, 2000. 1. 5, 2007. 11. 9>

점용료등 산정기준표(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1. 공작물의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하천부지)의 점용	<p>가.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p> <p>나.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1976년 8월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립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p> <p>다. 광업(골재채취는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하천구역 내의 토석·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6호의 요금을 가산한다.</p> <p>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p> <p>마. 관로 등의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p> <p>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p> <p>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p>												
3. 하천시설의 점용	제1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4. 선박 등의 운항	<p>가.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p> <p>1) 갑지: 월액 20,000원</p> <p>2) 을지: 월액 10,000원</p> <p>3) 병지: 월액 6,000원</p> <p>※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p> <p>나. 5톤 이하 유선</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지역등급</th> <th>동력선</th> <th>무동력선</th> </tr> </thead> <tbody> <tr> <td>1) 갑지</td> <td>월 100,000원</td> <td>월 50,000원</td> </tr> <tr> <td>2) 을지</td> <td>월 60,000원</td> <td>월 30,000원</td> </tr> <tr> <td>3) 병지</td> <td>월 20,000원</td> <td>월 10,000원</td> </tr> </tbody> </table> <p>※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1/10 가산</p> <p>다. 고무보트는 나목에 준하여 결정한다. 다만, 4인승 이하의 고무보트는 나목의 반액으로 한다.</p> <p>라. 고무보트 외에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사업등록선박은 나목에 준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나머지 레저기구는 다음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p> <p>1) 자체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구: 나목의 동력선의 반액</p> <p>2)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나목의 무동력선의 반액</p>	지역등급	동력선	무동력선	1) 갑지	월 100,000원	월 50,000원	2) 을지	월 60,000원	월 30,000원	3) 병지	월 20,000원	월 10,000원
지역등급	동력선	무동력선											
1) 갑지	월 100,000원	월 50,000원											
2) 을지	월 60,000원	월 30,000원											
3) 병지	월 20,000원	월 10,000원											

	<p>마. 부선(유선시설은 제외한다) 및 골재수송선</p> <p>1) 50톤 미만 : 월액 40,000원</p> <p>2) 50톤 이상 ~ 100톤 미만 : 월액 50,000원</p> <p>3) 100톤 이상 ~ 200톤 미만: 월액 70,000원</p> <p>4) 200톤 이상 ~ 300톤 미만: 월액 90,000원</p> <p>5) 300톤 이상 ~ 400톤 이하: 월액 110,000원</p> <p>6) 400톤 초과 시는 100톤 증가 시마다 16,000원씩 가산</p> <p>바. 가목 및 나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 고시한다.</p>
<p>5. 토석·사력의 채취</p>	<p>가. 당해연도의 토석·사력의 채취료는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사력 도매가격 평균값의 15/100</p> <p>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값</p> <p>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가격을 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장·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정할 수 있다.</p>
<p>6. 죽목, 갈대, 목초 및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p>	<p>점용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5호, 점용이 수반된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p>
<p>7. 스케이트장·유·도선장 (유·도선의 모선을 포함한다)·운동장·풀장·대기장 및 탈의장(매점을 포함한다)</p>	<p>토지가격의 5/100</p>
<p>8. 그 밖의 점용 및 사용</p>	<p>전 각 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p>
<p>※ 비고</p> <p>1. 1건의 점용료 등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p> <p>2.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직선거리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p> <p>3.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p> <p>4. 점용면적이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본다.</p>	

관련법령 발취

□ 하천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점용료등의 징수)(별표3)

※ 비고

1. 1건의 점용료등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시·도지사는 위 기준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부과비율을 낮게 조정할 수 있다.
3.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직선거리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4.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5. 점용면적이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본다.

제57조(하천수사용료의 징수)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이하 "하천수사용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발전용수: 1일 100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2. 농업용수: 1일 1천 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3.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4. 그 밖의 용수: 제3호에 따른 요금 또는 사용료

② 하천수사용료의 산정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